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아동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52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을 통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종전의 「지방세기본법」 체납처분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삭제(제14조제2항)
- 나. 종전의 ‘저소득층 아동’을 ‘아동’으로 변경하여 낙인효과해소에 도모(제명 등)
- 다. 종전의 정서치료 서비스 지원은 진료범위 변경으로 삭제(제8조)
- 라. 2019년 특수학교,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로 신규 대상 확대(제2조3항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구강보건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10. 10. ~ 10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저소득층 아동”을 “아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아동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재의 “아동복지시설”에 등록된 사람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
다.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55조에 따른 구 소재의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사람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등록된 장애인

마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4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 교육법」에 따른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저소득층 아동”을

각각 “아동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저소득층 아동”을 각각 “아동”으로 하고 “학생”으로 “사람으로” 한다.

제5조 중 “저소득층 아동”을 “아동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)”를 “(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저소득층 아동”을 각각 “아동”으로, “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구강건강관리 이외 정서치료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“(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)”를 “(아동 의료지원비 신청)”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저소득층 아동”을 “아동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구청장은 저소득층”을 “구청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저소득층 아동”을 “아동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호 및 제3호 중 “저소득층 아동”을 각각 “아동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저소득층 아동”을 “아동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저소득층 아동”을 “아동”으로 하고, 제2항은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, <u>저소득층 아동</u>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<u>저소득층 아동</u>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설치된 “<u>아동복지시설</u>”에 등록된 <u>아동</u>을 말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아동</u> ----- ----- ----- 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아동</u>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가. 「<u>아동복지법</u>」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<u>구</u>”라 한다) 소재의 “<u>아동복지</u></p>

<신 설>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

시설"에 등록된 사람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다.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55조에 따른 구 소재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등록된 장애인
마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- 4. "학생"이란 「초·중등 교육법」에 따른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 -----

----- 아동 -----

----- 아동 -----

--.

- 1. ----- 아동 -----

향

2.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
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

3.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
을 위한 지원

제4조(지원대상)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의 지원계획에 따른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액)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)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(이하 “지역협의체”라 한다)를 통하여 정하고

2. ----- 아동-----

3. 아동-----

제4조(지원대상) -----
- 아동 -----

----- 아동 -----

사람으로----- . -----

제5조(지원액) -----
----- 아동 -----

----- .

제8조(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) 아동 -----

----- 아동 -----

필요시 구강건강관리 이외 정서
치료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
신청)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
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
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
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 의료지
원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여야
한다.

제10조(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
영)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
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
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
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지역협의체에 간사 및 서기
를 1명씩 두며, 간사는 보건소
의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
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
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업무담
당팀장으로 한다.

⑥·⑦ (생략)

제11조(지역협의체의 기능) 지역
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심의한다.

1. (생략)

-----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
이 정한다.

제9조(아동 의료지원비 신청)
아동 -----

-----.

제10조(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
영) ① 구청장은 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아동 -----

-----.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지역협의체의 기능) 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
의료지원 대상선정, 진료범
위, 지원액의 기준, 의료비
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
아동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
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사항

제13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(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)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환수조치)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,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2. 아동 -----

3. ----- 아동 -----

제13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----- 아
동 -----

제14조(환수조치) -----
-----아동-----

<p>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3조 제1항의 예에 따른다.</p>	<p>② 삭제</p>
---	-------------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
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
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보건소 의약과 장영은 (☎ 3153-9171)